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33073 판결 [이득상환금]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3307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가단49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크라운제과

피고, 항소인A

변론 종결2015. 7. 16.

판결 선고2015. 8. 20.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가단49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별지 수표 목록 순번 1~3, 7~13의 수표를 물품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발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그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10, 11호증(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① 원고의 피용자인 B이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피고를 속여 이 사건 수표를 편취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그 액면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사용자로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위 수표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고(예비적 항변), ②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득상환청구권상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최후성과 어음채무자 이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이 사건 수표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선행하더라도 B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수표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② 수표의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수표법 제63조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승호

판사엄철

판사황보승혁

별지